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9.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상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체육관 운영
- 위 치
 - 장애인복지관 :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-17(호암동)
 - 곰두리체육관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(사천동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부터 5년간
- 수탁기관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
- 사 업 비('19년도)
 - 장애인복지관 : 1,861백만원(도비 100%)
 - 곰두리체육관 : 1,165백만원(도비 100%)

○ 위탁 주요사무

장애인복지관	곰두리체육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-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 등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활수영, 재활체육, 지역연계사업 등 - 수영장 운영, 여가문화지원, 목욕서비스 등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은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 지역재활시설)로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및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.

※ 위탁운영 약정체결 현황

1)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(1차~6차 / 5년주기)

- 수탁기관: 사회복지법인 송덕원

1차	2차	3차	4차	5차	6차
90. 4. 1.~ 95. 3. 31.	95. 4. 1.~ 00. 3. 31.	00. 4. 1.~ 05. 3.31	05. 4. 1.~ 10.3 . 31.	10. 4. 1.~ 14.12.31.	15. 1. 1.~ 19.12.31.

2)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((1차~5차 / 3~5년주기)

- 수탁기관: 사)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

1차	2차	3차	4차	5차
99.3.10~ 02.3.9.	02.3.10~ 07.3.9.	07.3.10~ 12.3.9.	12.3.10~ 15.3.9.	15.3.10~ 19.12.31.

-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상기 두 시설의 운영 위탁기간만료('19.12.31.)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및 종합의견

-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로, '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'에 규정된 각 시설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,
 - 장애인복지관은 ▲상담사례관리(사례발굴, 접수 및 사정, 개입계획, 개입, 지역회의 등) ▲기능강화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다감각촉진활동, 감각통합활동, 의사소통 향상, 학습능력 향상, 사회적응력 향상) ▲장애인 가족지원 ▲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▲직업지원(직업상담 및 평가, 전환교육, 사업체 개발 및 관리 등) ▲평생교육지원 ▲ 사회서비스지원(장애인활동 및 재활치료 지원)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,
 - 장애인체육시설인 곰두리체육관은 ▲재활체육사업(운동상담, 재활운동, 수중재활 등) ▲생활체육사업(기초체력증진,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) ▲문화여가사업(여행지원, 계절스포츠캠프 등) ▲지역연계체육사업 ▲사회서비스사업(발달재활서비스 등)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.
 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호에 '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'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상기 두 시설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,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 - 또한, 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경우, 개소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,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상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음.

- 따라서 두 시설은 관 직영보다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- 다만, 이후에라도 민간위탁에 따른 방만 운영, 부실 운영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경우,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귀속될 것임. 이에 수탁 기관에 대한 지휘,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임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

구분	시설의 종류 및 기능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	가. 장애인복지관: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·교육·직업·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바. 장애인 체육시설: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“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~④ (생략)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 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

제2조(위치) ①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은 충주시 도장관주로 34-17(호암동)에 둔다.

②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(사천동)에 둔다.

제7조(위탁운영)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